

## 독일판례 2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부록의 기사에 대한 반박문의 게재청구를 다음 부록이 발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함부르르 고등법원 1990.5.21. 판결

-3U 49/90 사건 -

## 적용법조

함부르크 주 언론법 제 11 조

## 판결요지

원문기사가 어느 잡지의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부록에 게재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피해자는 그의 반박문의 게재청구를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그 잡지의 부록이 발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 판결이유

이 사건 신청인이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에 기하여 한 반박문게재청구권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청구가 그 형식적 및 실체적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피신청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반적으로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S」 잡지의 아직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잡지에 게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Nielsen I 지역을 위하여 발행되고 배포될 위 잡지의 부록판에 게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그의 반박문이 「S」 잡지의 바로 다음호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을 내세웠는 바, 이는 정당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반박문은 아무런 제약없이 원문기사가 게재된 정기간행물의 아직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잡지에 게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Nielsen I 지역만을 위해서 발행되는 부록을 위에서 말한 정기간행물이라고 간주한다면 신청인은 그의 반박문의 게재를 위하여 또다시 위 부록부분이 발행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는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관념상 그 중요성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록판의 여러 특성들은 이것이 너무도 경미하여 이는 전국적으로 발행·배포되는 「S」 잡지와 동일성 내지는 통일적인 발간물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에서 말하는 정기간행물이라는 것은, 「S」 잡지처럼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S」 잡지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위 부록이 단지 부정기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위 부록에는 정기적인 간행물이라는 성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피신청인에게 열어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피신청인에게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반박문보도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은 명백하다.

「S」 잡지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잡지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록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반박문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박문은 원문기사가 발표된 간행물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확장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Soehring, Das Recht der Journalistischen Praxis, 1990, Rd.-Nr. 22. 23 참조). 그리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가 있는 것이다. 즉 원문기사가 어느 잡지의 「Rubrik」 란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그 잡지는 원칙적으로 항상 「Rubrik」 란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원문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위 잡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Rubrik」 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것이다(당원, AFP 1973. 388).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어 질 수는 없다. 즉 원문기사가, 어느 특정의 테마에 관하여, 1 회용으로 발간된 신문의 부록에 게재된 경우에는,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Seitz /Schmidt /Scho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Rd.-Nr. 216 m.w.N.) 피해자는 그 신문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위 부록에 상응한다고 여겨지는, 위 신문의 최초의 판의 해당부분에 그의 반박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신청인이 게재를 요구하는 반박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S」 잡지의 최초의 판에 피신청인이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피신청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재판부는 하등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근본목적은 원문기사를 접한 독자들과 같은 범위의 독자들에게 반박문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S」 잡지의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의 잡지가 Nielsen I 지역을 위한 부록을 포함하여 발간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위 반박문을 위 부록에만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당재판부의 견해이다. 그리고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당재판부가 다른 사건에서 실시한 바 있는 견해인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바로 이러한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S」 잡지의 최초의 잡지에 신청인의 반박문을 게재하게 되면, 이는, 위 잡지의 부록에 반박문을 게재하는 것이다. 불공평하게 더 넓은 범위에서 반박문을 보도하게 됨에 들림이 없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위 잡지의 부록이 가까운 장래에 발행되게 될 경우에는, 신청인은 장차 위 잡지의 Nielsen I 지방을 위한 부록에 대하여서만 그의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위 부록이 발행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잡지의 부록이 발행될 때까지는 분명히 1 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된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신청인이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기대가능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너무나도 급박한 것 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반박문보도청구권이라는 것은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2 주일 전에 위 「S」 잡지의 일반판에 반박문을 게재해 줄 것을 (즉 위 잡지의 「Auto-Journal」 란에 게재해 줄 것을)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잡지의 난은 신청인의 반박문을 게재하기에 분명히 적절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따라서 신청인은 원래부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하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